

	성희롱및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규정번호	3-1-12
		제정일자	2012.11. 5.
		개정일자	2026.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의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특정성별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와 함께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제22장, 제31장, 제32장 및 제38장 제 339조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본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 및 성폭력사건에 적용되며, 이는 신고 및 사건 처리시 사건 당사자가 모두 본교 구성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통계범위 내에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모든 구성원이라 함은 학교법인 경민학원 정관 및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로, 신고 및 사건 처리시 본 대학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중인 교원(시간강사 포함), 직원(계약직, 용역직 포함), 학생 및 교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 2 장 전담기구

제4조(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고충처리를 전담하기 위해 본 대학 대학인권센터 내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 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0.3.1., 2022.3.1.)

② 고충상담창구에는 성희롱·성폭력 상담팀과 업무효율을 위한 기타의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3.1.)

제4조의2(성희롱·성폭력 사이버신고센터)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0. 9.1.)

제5조(구성) ① 고충상담창구를 대표하고, 고충상담창구 전반의 업무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 이라 한다)을 총장이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각 1인 이상으로 지정하고, 인사 혹은 복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0.3.1.)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6조(업무)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

- ① 고충상담창구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개정 2020.3.1.)
- ②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포함)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 ③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 3 장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제7조(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구성)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책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대학인권센터장, 고충상담원 2명, 교원대표 2명, 직원대표 2명, 학생대표 2명 등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3.1., 2019.07.01., 2020.3.1., 2021.3.1., 2022.3.1.)
2. 위원장은 대학인권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22.3.1.)
3. 각 직능별 대표 2명 중 최소한 1명은 여성을 한다.
4.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총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 업무와 기능) 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대책 수립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 및 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상담업무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고충상담창구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관련자(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한다.(개정 2020.3.1.)

③ 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피신고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행위에 대하여 고충상담원에게 징계내용과 징계수위 및 이외의 조치사항을 요청한다.

제9조(회의)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과부 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②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피해자 보호

제10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제11조(피해자의 권리와 비밀보장)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를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신청 등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 ③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제 5 장 피해신고 및 접수

제12조(신고) 피해 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고충상담창구에 신고한다. (개정 2020.3.1.)

제13조(신고접수 및 위원회 회부) ① 고충상담창구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②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3.1.)

-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 2. 상담을 통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③ 고충상담창구는 위원회 보고 전에 피해당사자와 피신고인 및 사건 관련자를 소화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정황을 파악하는 면담을 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조정을 원하지 않고, 중재를 요청할 경우, 고충상담창구는 일차적으로 중재 작업을 한다. (개정 2020.3.1.)

⑤ 고충상담창구는 조사 및 심의가 필요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다.(개정 2020.3.1.)

제14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조사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징계 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 1. 교원 및 직원: 교원징계위원회 및 직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 처리
- 2. 학생: 학칙에 의한 징계처리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가해자 공개 사과(단,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 실명사과를 할 수 있다.)
- 2.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 3. 봉사활동 명령
- 4. 피해자에게 민·형사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등

③ 징계가 부결된 자에 대해서도 제 2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행위의 가해자를 방조한 자, 또는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동조자에게도 제2항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⑤ 가해자 일방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조치 및 인사권자의 징계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⑦ 징계권자는 징계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징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즉시 사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5조(가중징계 및 가중조치) 가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를 하거나 혹은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한 징계를 재발의 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2. 가해자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성폭력 상담소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피해자나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보복을 가한 경우
4.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제16조(재심의) 사건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충상담창구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1.)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